

“기업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하는 최고의 파트너”



## 강릉상공회의소

수 신 회원업체대표  
참 조  
제 목 강릉상공회의소 회원사 대상 지게차(3톤미만)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안내

1.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본 회의소에서 회원서비스 혜택(회비납부 회원사 대상)으로 관련 기업 내에 소형 운반장비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면허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비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### ▣ 아 래 ▣

1. 교육일자 : 매주 - 월,화,수,목,금 중 교육일 선택
2. 교육시간 : 09:00 ~ 15:00 2일, 12시간 (오전 내에 시작시간 변경 가능)
3. 교육장소 : 강릉중장비학원 (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풍호길 32-13)
4. 모집인원 : 정원 10명 (선착순 마감 /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)
5. 참가자격 : 1종 보통 운전면허취득자
6. 참가신청 : 참가신청서 이메일 제출(kangrung@korcham.net)
7. 교육비용 : 훈련비 인당 30만원 (강릉상의지원 15만원 / 기업부담 15만원)



첨 부 : 1. 지게차(3톤미만)면허취득 지원 안내 1부.  
2. 교육참가신청서 1부. 끝.

강릉상공회의소 회장 김 형 익



사원 최형규 팀장 백나현 사무국장 심일석

협조자

시행 강상의 제21-245호 ( 2021. 6. 9. ) 접수

우 25475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/ <http://gangneungcci.korcham.net>

전화 033-643-4411~3 팩스 033-643-4414 / [kangrung@korcham.net](mailto:kangrung@korcham.net) / 공개

# 강릉상공회의소 회원사 대상 지게차(3톤미만)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안내

## I 교육개요

- 회원서비스 혜택(회비납부 회원사 대상)으로 기업내에 소형 운반장비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면허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 지원을 통한 부담 완화로 자격면허 취득자 양성
- ※ 3톤미만 무면허운전 時 : 건설기계관리법 제9장 벌칙41조에 의하여,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, 사고발생 시에는 무면허운전자는 형사입건 및 사용자인 양벌규정에 의해 동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. (3톤미만 솔리드타이어식 디젤, LPG, 전동식도 도로에서 사고時 무면허로 인정 됨)

## II 세부추진계획

- 가. 교육기간 : 2021. 6월 ~ 7월 중
- 나. 교육내용 : 지게차(3톤미만)면허취득 교육비 지원
- 다. 사업주체 : 강릉상공회의소
- 라. 지원대상 : (회비 납부 회원사 대상) 1종보통 운전면허 취득자

마. 지원내용

- 훈련비 인당 30만원 중 강릉상공회의소에서 15만원 지원

(기업부담 15만원)

- 기업 당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
- 교육수료 후 증빙서류 제출 시, 15만원 업체에 지급

※지원금증빙서류

- 교육수료증,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사본, 업체통장사본

바. 교육시간 및 장소

- 매주(월,화,수,목,금)중 교육일 선택
- 09:00 ~ 15:00 (2일, 12시간) (오전내에 시작시간 변경 가능)
- 강릉중장비학원 (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풍호길 32-13)

사. 모집인원 : 정원 10명 (선착순 마감)

아. 신청방법 : 참가신청서 이메일 제출

[kangrung@korcham.net](mailto:kangrung@korcham.net)

자. 문의처 : 강릉상공회의소 총무부 (643-4411~3)

최형규 사원



**강릉상공회의소**